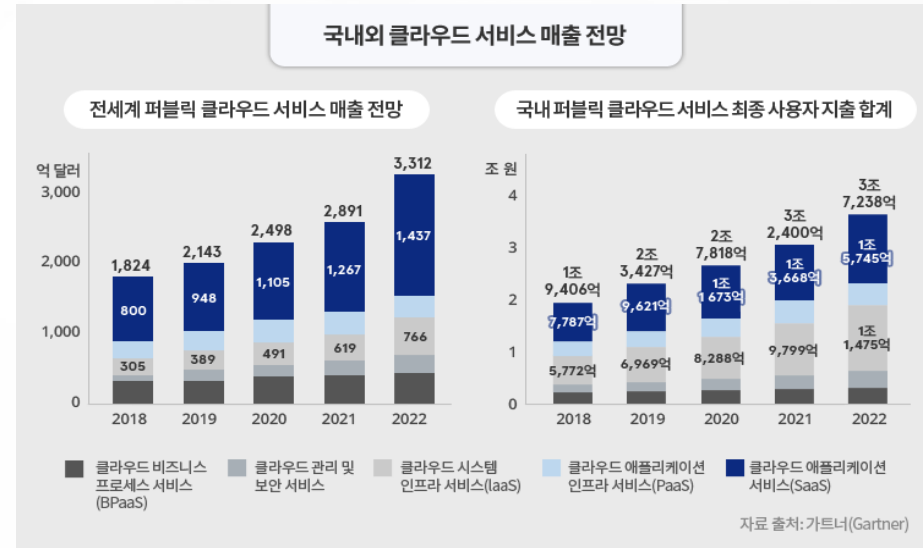


의료분야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방안

KISA 개인정보조사단 이 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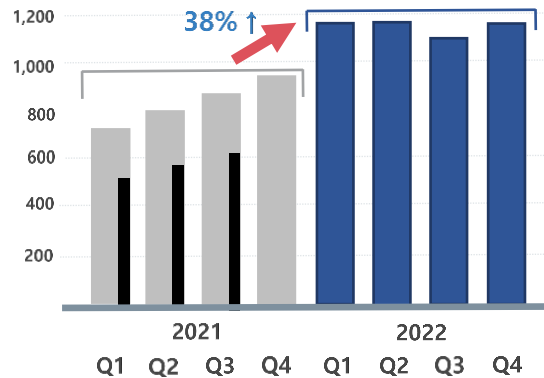
디지털 전환 가속화



최근 인터넷 정보보호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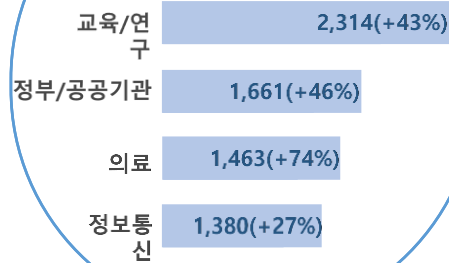
- ✔ 2022년 세계 사이버 공격 38% 증가, **교육·정부·의료** 분야 공격 **증가**
- ✔ **악성 이메일**과 **피싱**은 여전한 감염의 주요 요인
 - 2022년(7~10월) 피싱 공격 비율 1.3배 증가, 모든 공격의 **76% 차지**

[2021~2022 글로벌 주간 평균 사이버 공격 횟수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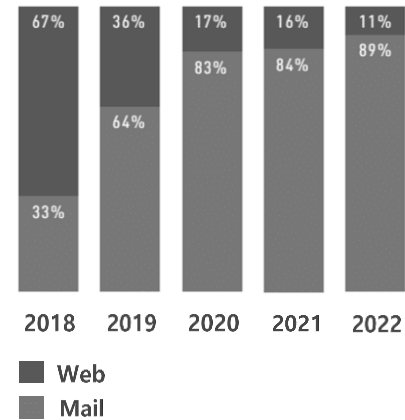


* Source: Check Point, 2023.2

2022년 산업/기관별
사이버 공격 횟수(주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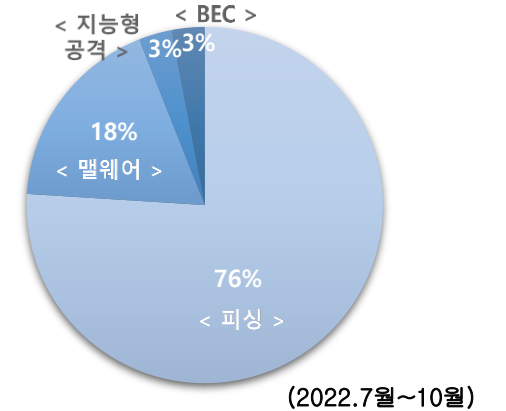


[이메일 악성파일 전송
비율]



* Source: Check Point, 2022.8

[사이버 공격 유형]



* Source: Acronis, 2023.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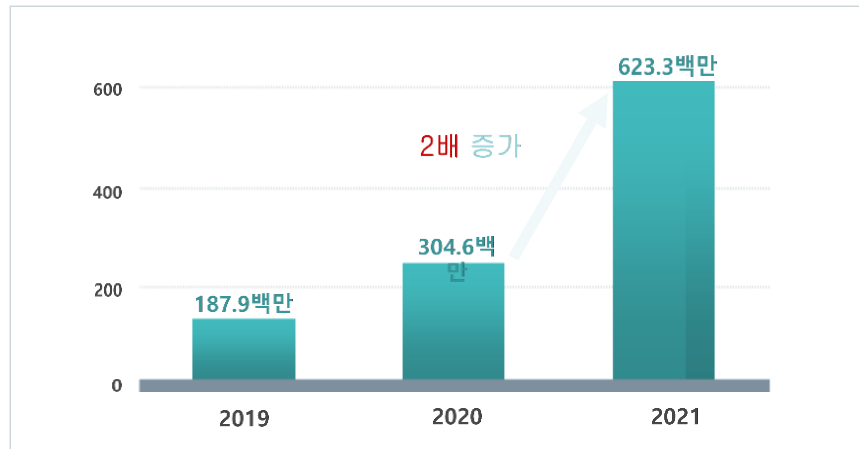
최근 인터넷 정보보호 동향

☑ 전 세계 랜섬웨어 공격 2배 증가

- 병원, 의료센터 및 공공기관 등을 주요 공격 대상으로 집중 공격
- 의료기관의 경우 랜섬웨어 공격 2배, 개인정보 유출 11배 증가(2016년→2021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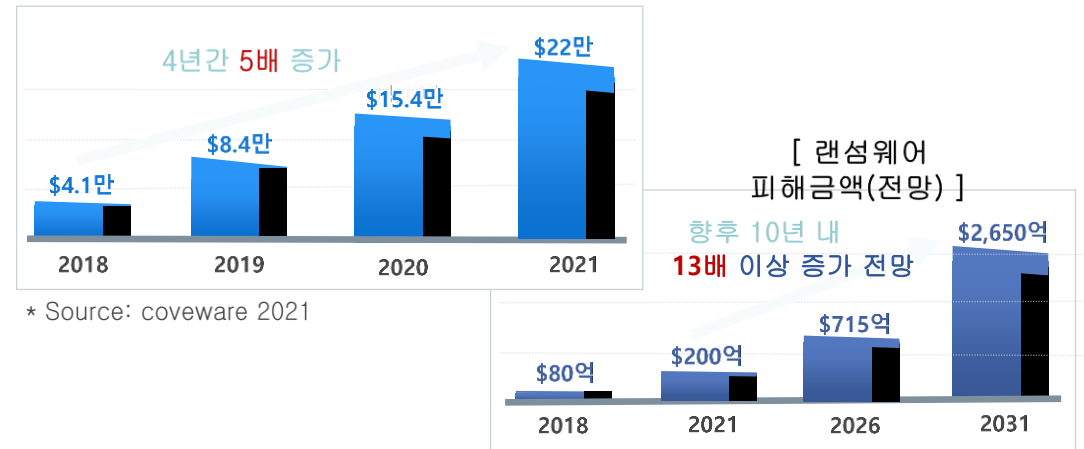
☑ 랜섬웨어 평균 협상 금액 건당 약 3억원에 육박

[랜섬웨어 공격 건수]



* Source: Statista, 2022.8

[랜섬웨어 평균 협상 금액(건당)]



* Source: coveware 2021

* Source: Cyber Crime magazine, 2022.6

2023년도 사이버 보안 위협 전망

3



지능형 지속 공격과 다중협박으로
무장한 랜섬웨어의 진화

4



디지털 시대
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위협 증가

5



갈수록 복잡해지는 기업의
SW 공급망과 위협 증가

주요 위반 사례

- ☑ 아주대학교의료원 :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
- ☑ 성형외과의원 : 영상정보처리장치(CCTV), 마케팅 관련 동의, 파기
- ☑ 순천제일병원 :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
- ☑ 서울대학교의료원 :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, 안전성 확보조치, 유출 통지
- ☑ 비대면진료 플랫폼 : 안전성 확보조치, 포괄동의, 처리방침 공개 미흡 등

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업무의 변화

⑤ 형벌 중심을 경제제재 중심으로 전환

- ☑ (이유)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 대한 형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실질적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한 경제제재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,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지 못하는 한계
 - 경제적 제재 수단인 과징금은 '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'의 3% 이하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부과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
 - ※ (EU) GDPR, 2천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총 매출액의 4%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
 - 브리티시 항공 50만명 유출(2,700억원 과징금, 영국), 구글 동의 방식 미 준수(650억원 과징금, 프랑스)
- ☑ (개정) 형벌 중심을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여 실효성 제고 [23. 9월 시행]
 - 형벌 폐지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, 개인정보 미파기, 개인정보 유출 시, 형사 처벌 폐지
 - 과징금 확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적용되는 과징금을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,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전체 매출액의 3% 이하로 상향

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업무의 변화

⑥ 민감정보 공개 가능성 고지 의무 신설

- ☑ (이 유) SNS·온라인 지도 등 온라인 공유 서비스 이용 시, 민감정보를 포함한 대량의 개인정보가 일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나, 이에 따른 위험성 등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음
- ☑ (개 정)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정보주체에 의하여 민감정보가 공개될 위험이 있는 경우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에 대한 통지 의무 신설 [’23. 9월 시행]

⑦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

- ☑ (이 유) 현행법은 고정형 영상기기(CCTV)만을 규율하고 있어, 드론,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에 맞는 기준제시에 한계
 - 현재 이동형 영상기기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시 일반 규정이 적용되어 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를 요하는 등 산업적 측면에서 유연한 대처에 한계
- ☑ (개 정) 공개된 장소 등에서 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, [’23. 9월 시행]
 -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, 촬영사실을 표시하였음에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등 예외적 허용



기업의 신속한 침해사고 탐지와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· 공유 시스템(C-TAS) 운영('14년 8월~)

- API로만 정보를 공유하던 공유형 C-TAS 방식에서 원하는 산·학·연 모두가 사이버 위협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방형 홈페이지 개설 · 오픈(22년 1월~)

공유형 C-TAS

공격시도 IP, 경유지, 유포지, 악성코드 등 40종 정보 공유

개방형 C-TAS

긴급 상황전파 서비스, 최신뉴스, 위협정보(악성코드/스미싱 등)

감사합니다!

